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인덱스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인덱스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인덱스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itmc.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09년 11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0년 3월 31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매기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276-4700, www.kitmc.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세전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인덱스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	61288
A	61853
A-H	73952
C	61287
e	62270

2. 모집예정기간 : 모집(판매)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종류명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tmc.com)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주식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초과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주식및채권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장외 파생상품	금리스왑거래	이자율	헤지 및 헤지외목적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함)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주 1) 상기 투자대상은 투자대상 중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대한민국 대표주가지수선물의 기초지수(이하 “대표지수”라 함)”의 수익률을 따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X 10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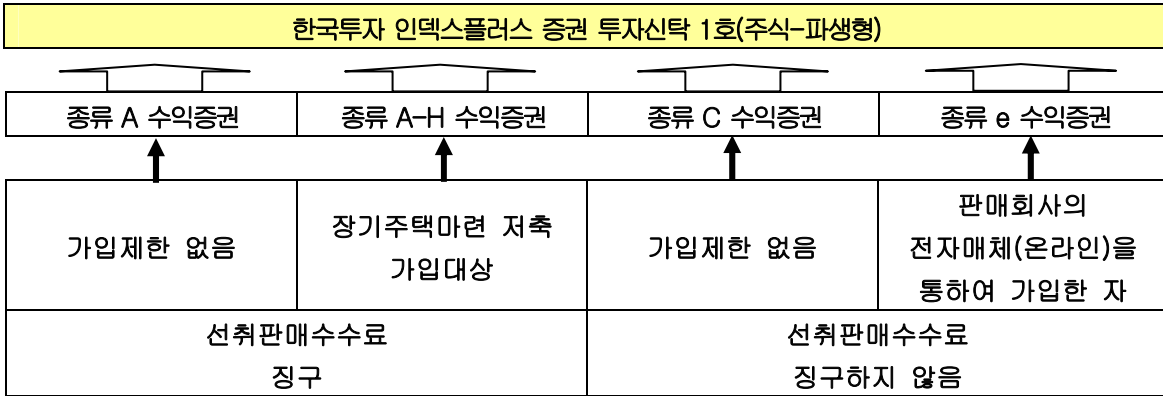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이상을 투자·운용하는 증권 투자신탁(주식 파생형)으로서 “대한민국 대표주가지수선물의 기초지수(이하 “대표지수”라 함)”의 수익률을 따르도록 하여 운용역의 주관적인 장세판단에 따른 자산배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지수 종목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인덱스방식으로 운용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특정종목군(예:시가총액상위 20~30개 종목 등)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지수의 수익률을 가장 효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최대다수의 종목(70~140개 종목 예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Buy & Hold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재구성(Portfolio Rebalancing)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물, 선물, 합성선물 등 관련 투자대상종목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보수적 차익거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초과수익을 추구할 예정이며, 투기적 차익거래는 철저히 배제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투자 외의 자산은 우량한 이자자산 및 단기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 당해 투자신탁의 구조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각의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tmc.com/kitmcusr/comm/main.jsp?mainmenu=02&submenu=12>) 에 공시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기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상기 3.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2. 제 1 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집합투자재산을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 보수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추적대상 지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추종하는 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추적대상지수의 산출이 불가할 경우, 타 지수제공기관이나 당사에서 산출한 추적대상지수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변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적오차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금리스왑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왑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스왑 포지션이 swap pay position일 경우: 금리 하락시, swap receive position일 경우: 금리 상승시)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서 주식시장 하락 등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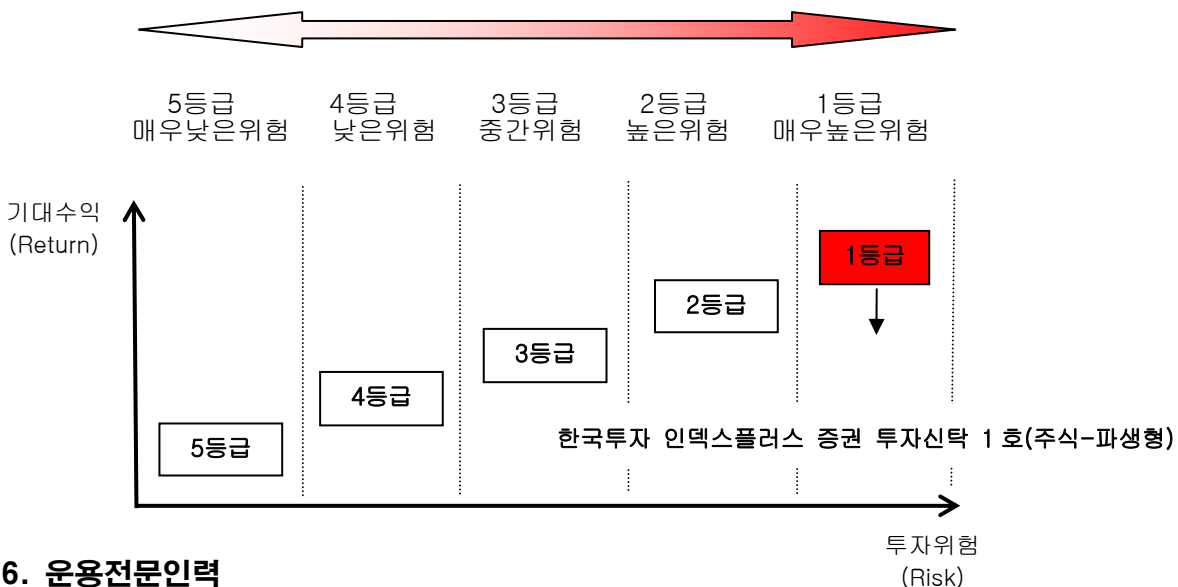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류 A-H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9항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6.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09.11.30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성민	1970	팀장	11개	2,026억원	- 서강대 경제학과 / KAIST 금융공학대학원

					- 2004.01~2004.11 : 플러스자산운용 금융공학팀 - 2004.11~2005.05 : 메리츠증권 금융공학팀 - 2005.05~2007.03 : 유리자산운용 시운용팀 - 2007.03~2008.08 : CJ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 - 2008.08~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시스템운용본부
--	--	--	--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12.01 ~09.11.30	07.12.01 ~09.11.30	06.12.01 ~09.11.30		06.10.23 ~09.11.30
투자신탁(전체)	49.68	-5.47	5.94		7.17
비교지수	45.56	-8.00	3.47		4.79
종류 A	48.60	-6.20	5.13		6.27
비교지수	45.56	-8.00	3.47		4.51
종류 A-H	48.40	-6.42			-5.71
비교지수	45.56	-8.00			-7.26
종류 C	47.56	-6.96	4.36		5.59
비교지수	45.56	-8.00	3.47		4.79
종류 e	48.46	-6.35	5.04		5.67
비교지수	45.56	-8.00	3.47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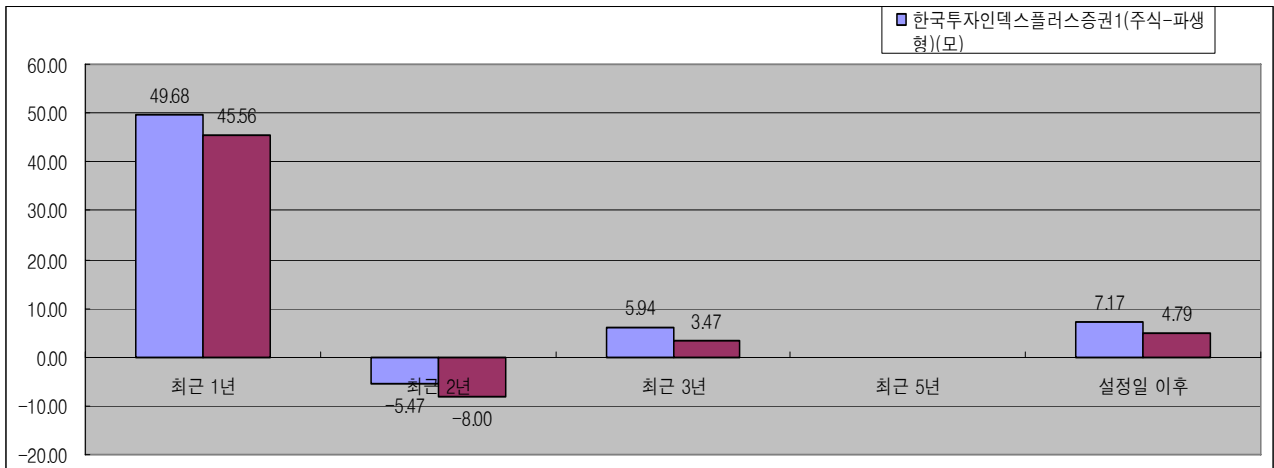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1 * [KOSPI2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8.12.01 ~09.11.30	07.12.01 ~08.11.30	06.12.01 ~07.11.30		
투자신탁(전체)	49.68	-40.30	33.04		
비교지수	45.56	-41.85	30.86		
종류 A	48.60	-40.79	32.06		
비교지수	45.56	-41.85	30.86		
종류 A-H	48.40	-40.99			
비교지수	45.56	-41.85			
종류 C	47.56	-41.33	31.30		
비교지수	45.56	-41.85	30.86		
종류 e	48.46	-40.92	32.14		
비교지수	45.56	-41.85	30.86		

(주 1) 비교지수: (1 * [KOSPI2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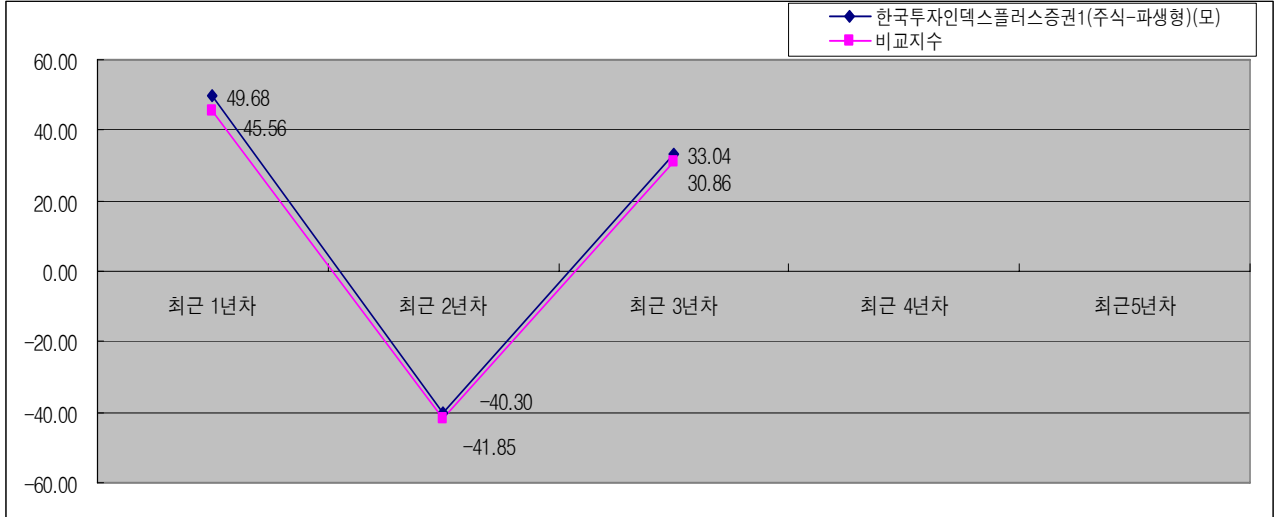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A	종류 A-H	종류 C	종류 e	
가입자격	제한없음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0.9%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환매시
환매수수료	-	-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용 (연간, %)				부과시기
	종류 A	종류 A-H	종류 C	종류 e	
가입자격	제한없음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0	0.3000	0.3000	0.3000	최초
판매회사보수	0.4000	0.4000	1.2000	0.5000	설정일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0.0300	0.0300	로부터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40	0.0140	0.0140	0.0140	매3개월 후급
기타 비용	0.0181	0.1847	0.0346	0.0566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7621	0.9287	1.5786	0.9006	-
증권 거래비용	2.6073	2.6243	2.6960	2.6528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8.10.23 ~ 2009.10.22]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08.10.23 ~ 2009.10.22]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7	331	508	1,021
종류 A-H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4	383	598	1,216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2	502	866	1,888
종류 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288	501	1,112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와 종류 C]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다만 종류A-H 수익증권의 경우,

-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세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기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tmc.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절차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구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9%
종류A-H ^(주)	장기주택마련저축용	납입금액의 0.9%
종류 C	제한없음	-
종류 e	온라인가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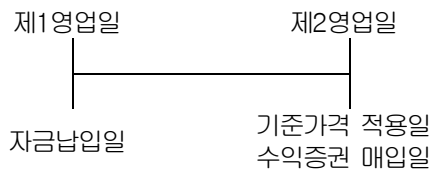
(주) 이 투자신탁의 종류 A-H 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주택자금마련 및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류 A-H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1 조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러한 종류 A-H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 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1 조 제 9 항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 소득세법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 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5시[오후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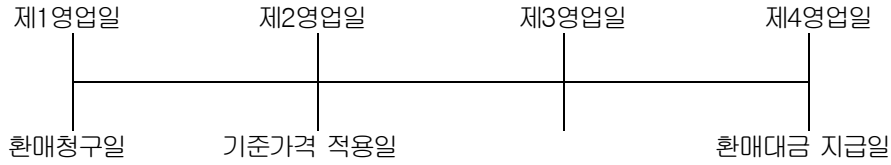
다. 환매 절차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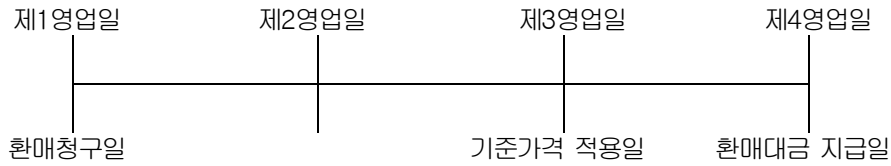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A-H	종류 C 종류 e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4. 전환 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1) 투자신탁(전체)(종류모)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9.10.22)	(2008.10.22)	(2007.10.22)
운용자산	109,326,365,720	75,561,385,248	76,018,693,634
증권	99,358,478,850	63,665,535,950	65,286,323,41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967,886,870	11,895,849,298	10,732,370,22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7,370,719,041	7,633,168,998	19,607,445,982
자산총계	126,697,084,761	83,194,554,246	95,626,139,61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703,331,606	8,485,649,172	2,510,531,340
부채총계	18,703,331,606	8,485,649,172	2,510,531,340
원본	114,157,339,822	118,022,372,912	68,311,828,225
수익조정금	-3,319,827,294	-3,833,024,024	11,606,321,487
이익잉여금	-2,843,759,373	-39,480,443,814	13,197,458,564
자본총계	107,993,753,155	74,708,905,074	93,115,608,276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8.10.23 - 2009.10.22)	(2007.10.23 - 2008.10.22)	(2006.10.23 - 2007.10.22)
운용수익	39,774,234,555	-39,355,530,328	13,285,206,706
이자수익	582,822,604	1,508,099,557	1,280,386,638
배당수익	835,027,235	1,211,434,302	127,333,852
매매/평가차익(손)	38,356,384,716	-42,075,064,187	11,877,486,21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719,508,880	122,649,160	85,874,39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719,508,880	122,649,160	85,874,390
기타비용	3,459,887	2,264,326	1,873,752
당기순이익	39,051,265,788	-39,480,443,814	13,197,458,564
매매회전율	9,009.58	820.13	2,411.79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8,189.45)% 상승되었으며, 이는 현물, 선물, 합성선물 등 관련 투자대상종목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차익거래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초과수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빈번한 매매가 발생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종류 A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9.10.22)	(2008.10.22)	(2007.10.22)
운용자산	16,809,723,756	9,115,507,640	3,195,013,314
증권	16,809,723,756	9,115,507,640	3,195,013,31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0,761,958	30,160,422	80,059,179
자산총계	16,840,485,714	9,145,668,062	3,275,072,49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4,328,233	44,750,395	85,255,489
부채총계	54,328,233	44,750,395	85,255,489
원본	18,022,191,545	14,496,906,090	2,375,204,146
수익조정금	-165,770,160	-1,931,626,550	176,353,797
이익잉여금	-1,070,263,904	-3,464,361,873	638,259,061
자본총계	16,786,157,481	9,100,917,667	3,189,817,004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8.10.23 - 2009.10.22)	(2007.10.23 - 2008.10.22)	(2006.11.08 - 2007.10.22)
운용수익	5,731,430,781	-3,420,675,496	651,820,772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731,430,781	-3,420,675,496	651,820,772
기타수익	0	80,269	0
운용비용	90,052,245	42,238,178	13,218,744
관련회사 보수	90,052,245	42,238,178	13,218,74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484,524	1,528,468	342,967
당기순이익	5,637,894,012	-3,464,361,873	638,259,061
매매회전율	0.00	0	0

(3) 종류 A-H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9.10.22)	(2008.10.22)	(2007.10.22)
운용자산	1,230,955,274	437,893,463	42,251,502
증권	1,230,955,274	437,893,463	42,251,50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0	0	0
자산총계	1,230,955,274	437,893,463	42,251,50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128,577	1,117,820	16,573
부채총계	2,128,577	1,117,820	16,573
원본	1,338,956,098	704,523,656	42,666,039
수익조정금	68,482,227	-59,130,596	1,133,232
이익잉여금	-178,611,628	-208,617,417	-1,564,342
자본총계	1,228,826,697	436,775,643	42,234,929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8.10.23 - 2009.10.22)	(2007.10.23 - 2008.10.22)	(2007.09.20 - 2007.10.22)
운용수익	337,430,405	-198,436,583	-1,547,769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37,430,405	-198,436,583	-1,547,769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5,671,745	2,286,693	16,280
관련회사 보수	5,671,745	2,286,693	16,28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511,959	775,767	293
당기순이익	330,246,701	-201,499,043	-1,564,342
매매회전율	0.00	0	0

(4) 종류 C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9.10.22)	(2008.10.22)	(2007.10.22)
운용자산	84,007,224,281	62,524,164,798	87,967,278,769
증권	84,007,224,281	62,524,164,798	87,967,278,76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87,649,401	88,965,482	225,995,647
자산총계	84,294,873,682	62,613,130,280	88,193,274,41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02,389,143	393,605,298	541,866,041
부채총계	602,389,143	393,605,298	541,866,041
원본	91,306,425,979	100,008,175,139	65,126,905,583
수익조정금	-3,165,981,809	-1,883,169,040	10,740,776,545
이익잉여금	-4,447,959,631	-35,905,481,117	11,783,726,247
자본총계	83,692,484,539	62,219,524,982	87,651,408,375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8.10.23 - 2009.10.22)	(2007.10.23 - 2008.10.22)	(2006.10.23 - 2007.10.22)
운용수익	31,170,132,212	-34,590,917,405	12,312,545,382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1,170,132,212	-34,590,917,405	12,312,545,382
기타수익	43,672,351	48,964,949	95,268,978
운용비용	1,128,013,864	1,310,016,290	599,300,459
관련회사 보수	1,128,013,864	1,310,016,290	599,300,45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33,104,800	53,512,371	24,787,654
당기순이익	30,052,685,899	-35,905,481,117	11,783,726,247
매매회전율	0.00	0	0

(5) 종류 e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9.10.22)	(2008.10.22)	(2007.10.22)
운용자산	5,945,849,844	2,631,339,173	1,911,064,691
증권	5,945,849,844	2,631,339,173	1,911,064,69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0	1,651,960	0
자산총계	5,945,849,844	2,632,991,133	1,911,064,69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819,986	8,745,145	3,604,488
부채총계	11,819,986	8,745,145	3,604,488
원본	6,391,456,617	4,189,785,463	1,439,600,746
수익조정금	154,171,482	-269,318,560	238,360,441
이익잉여금	-611,598,241	-1,296,220,915	229,499,016
자본총계	5,934,029,858	2,624,245,988	1,907,460,203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2008.10.23 - 2009.10.22)	(2007.10.23 - 2008.10.22)	(2006.11.22 - 2007.10.22)
운용수익	1,812,272,390	-1,270,414,330	235,344,08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812,272,390	-1,270,414,330	235,344,080
기타수익	1,552,189	637,041	1,606,412
운용비용	34,450,522	22,185,485	6,623,923
관련회사 보수	34,450,522	22,185,485	6,623,92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764,730	4,258,141	827,553
당기순이익	1,776,609,327	-1,296,220,915	229,499,016
매매회전율	0.00	0	0